🦊 혁신창업사업화자금

◈ 사업목적 및 융자규모

가. 사업목적

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하나 민간 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벤처·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고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사업화를 지워

나. 지원규모 : 융자(1조 6,358억원), 이차보전(1,526억원)

1-1 창업기반지원자금

- □ 창업기반지원자금(일반)
 - (대상)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제2조에 따른 창업자(업력 7년 미만, 예비창업자 포함) 또는 동법 제25조에 따른 신산업 창업 분야 (참고 1-1) 업력 10년 이내 중소기업
 - * (업력산정) 사업개시일로부터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제출일까지 (법인전환 등의 경우 최초 창업한 기업의 사업개시일부터 산정)
 - (**융자방식**) 직접대출, 대리대출, 성장공유형 대출, 투자조건부 융자
 - (대출조건)

구분	대출 조건
대출한도	(직접·대리대출) 연간 60억원 이내 (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)
	(직접·대리대출, 시설) 10년 이내 (거치기간 : 담보 4년 이내, 신용 3년 이내) (직접·대리대출, 운전) 5년 이내 (거치기간 : 2년 이내)
대출금리	(직접·대리대출) 정책자금 기준금리(변동) - 0.3%p
기 타	• 별표3(용도별 대출한도 우대기준, p44)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•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(기업 수행)